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3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해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해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등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항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6.25.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31BL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33층 6개동. 총 69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예정 : 2029년 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세 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084.9700A	84A	84.9700	25.7378	110.7078	45.7730	156.4808	462
084.9700B	84B	84.9700	26.1478	111.1178	45.7730	156.8908	153
084.9700C	84C	84.9700	26.1578	111.1278	45.7730	156.9008	75
합 계							690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 ()는 예비대상세대임

구분		84A	84B	84C	합계	
기관 추천	장기복무제대군인	4(20)	1(5)	1(5)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1(5)	1(5)	6	
	의사상자	1(5)	1(5)	-	2	
	북한이탈주민	1(5)	1(5)	-	2	
	납북피해자	1(5)	1(5)	-	2	
	다문화가족	3(15)	1(5)	1(5)	5	
	우수선수	1(5)	1(5)	-	2	
	우수기능인	1(5)	1(5)	-	2	
	중소기업근로자	8(40)	3(15)	1(5)	12	
	체육유공자	1(5)	1(5)	-	2	
	장애인	경기도	7(35)	3(15)	2(10)	12
		서울시	5(25)	2(10)	1(5)	8
인천시		5(25)	2(10)	1(5)	8	
국가유공자		23(115)	7(35)	4(20)	34	
합계		65	26	12	103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25.(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
건본주택 오픈	2026.07.03.(금) 예정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 건본주택(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510-490)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청약 원칙]	2026.07.06.(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	2026.07.16.(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추천자 또는 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구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입주자저축 불필요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과거 해당제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5.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단,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거주무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당첨예정자)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중복청약 등 자격관련 사항은 추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 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여부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31BL) 공공분양 분의

대표번호

031) 8029-9099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g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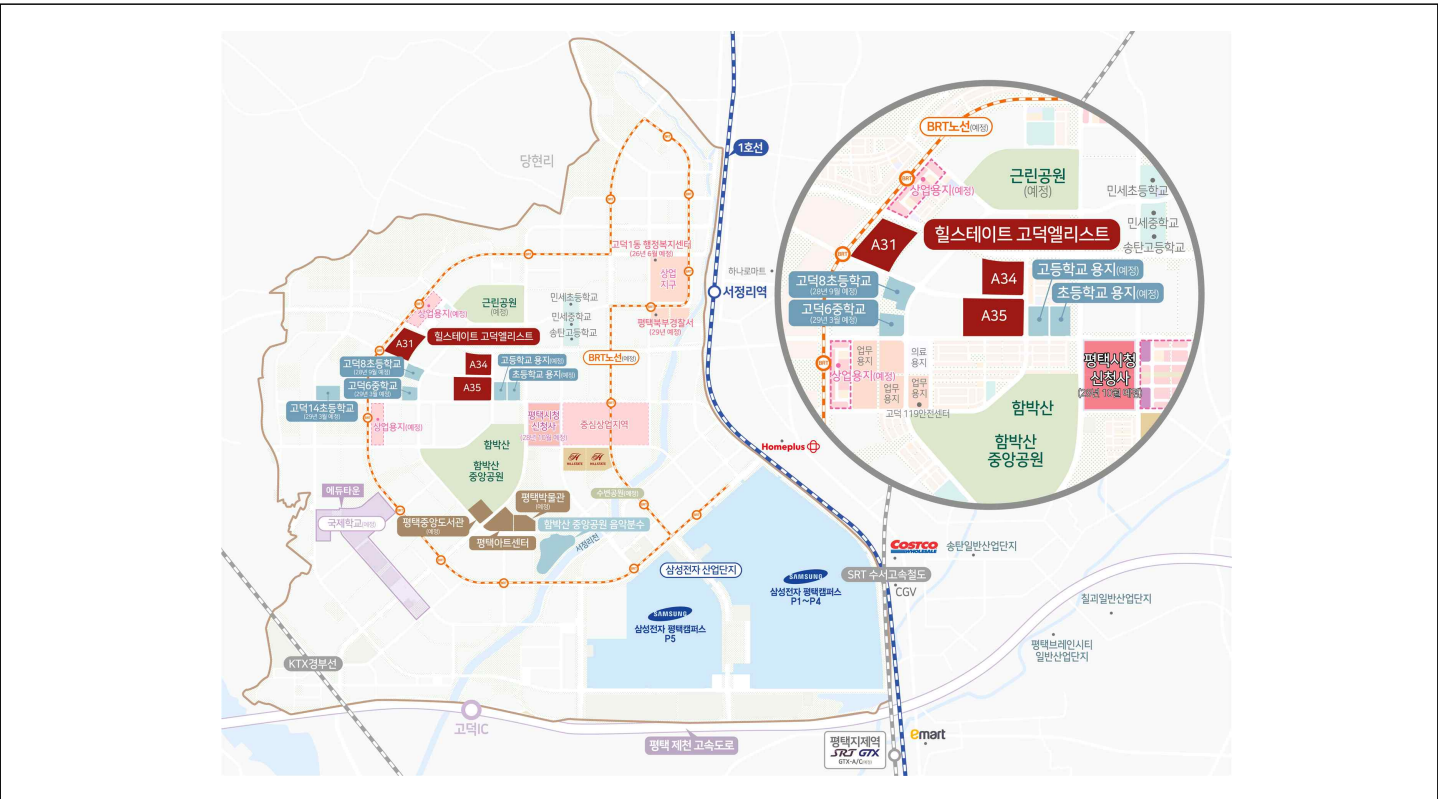
※ 추천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은 각 추천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6. 견본주택 안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510-490



#별첨. 위치도



※ 본 홍보물의 일러스트(그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34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해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해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등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항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6.25.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을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34BL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67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예정 : 2030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세 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058.1400A	58A	58.1400	22.8818	81.0218	49.1329	130.1547	446
058.4900B	58B	58.4900	23.0728	81.5628	49.4286	130.9914	129
058.1600C	58C	58.1600	22.9676	81.1276	49.1498	130.2774	104
합 계							679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 ()는 예비대상세대임

구분		58A	58B	58C	합계	
기관 추천	장기복무제대군인		4(20)	1(5)	1(5)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1(5)	1(5)	6
	의사상자		1(5)	1(5)	-	2
	북한이탈주민		1(5)	1(5)	1(5)	3
	납북피해자		1(5)	-	1(5)	2
	다문화가족		2(10)	1(5)	1(5)	4
	우수선수		1(5)	-	1(5)	2
	우수기능인		1(5)	-	1(5)	2
	중소기업근로자		8(40)	3(15)	1(5)	12
	체육유공자		1(5)	1(5)	-	2
	장애인	경기도	7(35)	3(15)	1(5)	11
		서울시	5(25)	2(10)	1(5)	8
인천시		5(25)	2(10)	1(5)	8	
국가유공자		23(115)	7(35)	4(20)	34	
합계		64	23	15	102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25.(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
건본주택 오픈	2026.07.03.(금) 예정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 건본주택(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510-490)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청약 원칙]	2026.07.06.(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	2026.07.15.(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추천자 또는 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구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입주자저축 불필요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과거 해당제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5.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단,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거주무기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당첨예정자)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중복청약 등 자격관련 사항은 추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 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여부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 A35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해 해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해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등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항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6.25.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35BL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5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예정 : 2030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세 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084.9700A	84A	84.9700	24.7125	109.6825	48.6151	158.2976	515
084.9700B	84B	84.9700	25.0025	109.9725	48.6151	158.5876	159
084.9700C	84C	84.9700	25.0725	110.0425	48.6151	158.6576	79
합 계							753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 ()는 예비대상세대임

구분		84A	84B	84C	합계	
기관 추천	장기복무제대군인		4(20)	1(5)	1(5)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1(5)	1(5)	6
	의사상자		1(5)	1(5)	-	2
	북한이탈주민		1(5)	1(5)	-	2
	납북피해자		1(5)	1(5)	-	2
	다문화가족		5(25)	1(5)	1(5)	7
	우수선수		1(5)	1(5)	-	2
	우수기능인		1(5)	1(5)	-	2
	중소기업근로자		9(45)	4(20)	1(5)	14
	체육유공자		1(5)	1(5)	-	2
	장애인	경기도	8(40)	3(15)	1(5)	12
		서울시	6(30)	2(10)	1(5)	9
인천시		6(30)	2(10)	1(5)	9	
국가유공자		26(130)	8(40)	4(20)	38	
합계		74	28	11	113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25.(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gd)
건본주택 오픈	2026.07.03.(금) 예정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 건본주택(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510-490)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청약 원칙]	2026.07.06.(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	2026.07.14.(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추천자 또는 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구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입주자저축 불필요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과거 해당제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당첨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5.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단,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거주무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당첨예정자)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중복청약 등 자격관련 사항은 추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 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여부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